KOSHA GUIDE C - 109 - 2017

## 5. 작업계획 수립

- (1) 플랜트 개·보수 공사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 법령, 동 고시 및 안전보건공단 지침 등)을 반영하고 각 작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2) 정기보수, 일반보수, 긴급보수 계획 수립 시 <표 2>와 같이 위험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langle \overline{y}$	2>	ㅂ수	고사	종류별	의허요	0]	트서
\ TT	/./	r - r	$\Delta \cap \Gamma$	$\sim T$	71 71 17	- 5 !	<b>–</b> 7

구 분	위험요인 특성				
정기보수	단시간에 동시다발적인 여러 작업이 진행되고 다수의 외부				
	근로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잔류 위험물질 등에 의한 대형				
(Turn Around, Overhaul)	사고의 위험이 높음				
일반보수(유지보수)	위험물의 누출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음				
기그니스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긴급보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음				

- (3) 작업별 특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한 정비·수리 작업 등을 도급 시 발주자는 위험요소 및 화학물질 정보의 공유, 적정한 안전보건조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나)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시행될 때
  - ① 모든 단위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각 작업이 다른 작업에 어떤 요인(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간 연계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 (4) 도급업체의 하도급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 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및 취급설비에 대한 유해· 위험정보를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 (나) 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화기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키고 이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